

보험금 청구서



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**보험금 청구서** 및 청구서류(병원서류)와 <mark>함께 제출</mark>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[보험자(보험 	,	X01000	_				글리II ·		
성명		주민등록번	오	<u>-</u>		A-1-1	휴대폰 :		
주소						연락처	자 택:		
							E-mail:		
구 세부내용									
청구내용	입원 수술	진단	장해	사	통원 통원		의료비	기타	
사고내용	□ 질병 □ 일반자 • 사고일시 : 년 • 사고경위 (6허원칙에 맞자 • 실손의료비 또는 통원비(년 월 네 기재)	통재해 일 시	분	기타・ 사고장소병명 :	:			
ਜ਼ਮਮਾ	명은 평생든든 서비스를 통해	,				실구된기 (i	-0 시 H원그 0 8		コ 6]人ı lel.
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하는 항상으로 시키스를 하 함자 본인인 경우) 이번에 청				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		아니오
 :익자 송금계	 좌 / 청구 보험금 안내								
수익자	주민등록번	호				주소			
	_								
휴대폰 :		7	자택 :	_	_	E-ı	mail:		
수령방법	송금	내방 요	요청계좌(수익자)	은행명 :	7	계좌번호 :			
사고 연금	□ 일시금 ※ 일시금 선택시 약관에 따라 정해진 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선지급하여 드립니다. □ 분할(매년/매월) ⇨ □ 금번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상기 요청 계좌로 자동송금 신청 • 예금주(수익자): 서명(인):								
발생 시 수령방법	증서번호	급부명	3	S서번호	급부명		증서번호		급부명
(간병자금 등									
특정상품에 한함)	※ 자동송금 신청시 확정지는 (생존확인이 필요하거나,					하여 드립니다	-		
보험금 심사	관련 제 안내 방법 선택(심사지	연, 지급내역 등)	□ 문제	· 메세지	E-mail		우편 🗌 7	전화안내	미신청
	모범규준에 따라 심사지연 및 험금 감액 또는 부지급 사유			하신 방법으로	일 안내드리고, 이	외 심사과정	성 안내는 문자메시	지로 안내!	드립니다.
은행송금의 절차는	당사 기준에 의하며, 송금계좌로 등	등록되지 않은 계좌인	경우에 2천만원까지	송금이 가능합니다	라.				
느시 설명들	고 확인하셔야 할 사항								
• 청구하신 보험금 • 청구하신 보험금 즉시 지급하여 • 청구하신 보험금	보험업법 제95조의 2 제3항, 제4항 금의 심사 담당부서 및 연락처는 금은 지급사유가 인정될 경우 보험금 드리며, 보험금 심사·지급이 지연5 금은 직접 당사에 내빙하여 수령하사	를 (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 라는 경우에는 그 지연. 시거나 계좌송금을 통 [®]	날부터 3영업일 이내 사유를 별도로 설명 I여 수령하실 수 있습	/ ☎ (단, 지급사유의 : 드리고 아울러 소 타니다.	조사나 확인이 필요함 정의 가산금을 더하) 입니 한 때에는 접수 여 지급합니다	시다. -한 날부터 10영업일 -		7
	사 결과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 지급하는 경우 해지결정 이전에 납입			기에 따라 기납입!	코험료 또는 해지환	급금을 지급합	니다.		
단체명					<u>수</u> º	나자(청구인)	:	서명(인):
단체 계약자가 청구시 작성 (명판, 거래인감 날인) 명 판 사망 또는 장해급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청구시 [단체보험금청구, 수령 안내 확인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.			거래		<u>주</u> 민	주민등록번호 피보험자와의 관계			
					피토				
		i 함.	인감		× =	구 인 연락처 우익자본인이 바닌 경우 기재	휴대폰: 자 택:	-	-
– 사업자등록증	성구시 추가 필요서류 안내 사본(등록인감 원본대조필) 인) 서류 접수시 실명증표 + 명함(또는 자	T I T I T I I					E-mail: 임서류가 추가 필요합니다	- .	를 A Q

 ※ 주의: "보험사기(허위입원, 고의사고, 피해과장 등)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10년 이하의 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, 보험가입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"

 접수경로
 다
 다
 다
 다
 나반:
 기점명:
 H.P:
 대신원[성명:
 사반:
 기업명:
 사반:
 기업명:
 보험금 접수증 및 지급절차 안내 전달
 다
 바문전달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
 다</



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[



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가 일부 제한될 수 있고 본 동의서에 의한 개인(신용)정보 조회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
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본 계약과 관련하여	귀하의
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·이용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	동의함 🗌

-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 -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, 보험금지급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대응
 - 금융거래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을 위한 금융거래 신청, 자동이체 등 접수) 관련 업무
- 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 -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운전면허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휴대전화번호, 이메일주소 등), 계좌정보
 -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(신용)정보 (경찰, 공공기관,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본인의 위임을 받아 취득한 각종 조사서, 증명서, 진료기록 등에 포함된 개인(신용)정보 포함)
-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보험사기 방지·적발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하며 별도 보관)

2.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다음과 같이	
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조회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?	동의함 🗌

- 개인(신용)정보의 조회 목적
 - 보험금 지급·심사(보험금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 포함) 및 보험사고 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
- 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 - 보험계약정보,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(사고정보 포함), 질병 및 상해 관련 정보
- 조회 동의 유효기간 및 조회자(제공받는 자)의 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 - 수집·이용 동의일로부터 거래종료 후 5년까지 (단,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험금 지급, 금융사고 조사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보유·이용하며 별도 보관)



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수 동의서 Ⅱ



3. 개인(신용)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
당사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	
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 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	동의함
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
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
 - 공공기관 등 : 금융위원회, 국토해양부, 금융감독원,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 공공기관,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(위탁사업자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생명보험회사, 손해보험회사, 국내·국외 재보험사, 공제사업자, 체신관서(우체국보험), 금융 거래 관련 계좌개설 금융기관, 금융결제원
 - 업무수탁자 등 : 보험금지급·심사 및 보험사고조사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[보험사고 조사업체 / 손해사정업체(KCA손해사정㈜), 의료기관·의사, 변호사, 위탁 콜센터]
 - ※ 상기 업무수탁자는 계약종료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
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
 - 신용정보집중기관 :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관련 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
 - 공공기관 등 : 보험업법 등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(위탁업무 포함)
 - 보험회사 등 : 보험사고조사(보험사기 조사 포함) 및 손해사정서비스 등 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,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대행 서비스, 진료비심사. 의료심사 및 자문
 - 금융거래 업무(보험료 및 보험금 등 출·수납)
- 제공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 - 「1. 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」의 정보내용 ※ 단, 각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
- 제공받는 자의 개인(신용)정보 보유·이용 기간
 -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(최대 거래 종료 후 5년까지)
- ※ 각 제공 대상기관 및 이용목적의 구체적인 정보는 당사 홈페이지(www.kyobo.c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4.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

당사 및 당사 업무수탁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상기의 개인(신용)정보에 대한 개별 동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귀하의 민감정보(질병·상해정보) 및 고유식별 정보(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)를 처리(수집·이용, 조회, 제공)하고자 합니다. 이에 동의하십니까?

질병·상해 정보 처리	동의함
주민등록번호·외국인등록번호 처리	동의함

20	년	월	일

동의자 성명: 서명(인):



구분	구비서류	유의사항	
공통 서류	- 보험금 청구서(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, 계좌번호 포함) - 청구인 신분증 사본 ※(필요 시) 추가 서류 가족관계 확인 필요 시(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): 가족관계 확인 서류 [예시]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시: 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, 보험금 청구권 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동의서	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자녀의 경우 계약사항내에 자녀등록시 가족관계확인서류 생략	
사망	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가 첨부된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사본 (원본대조필 포함) ※(수익자 미지정시) 추가 요청서류 ·상속관계 확인서류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 ·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 	- 기본증명서 이외 서류 : 시망사실이 기재된 호작제적등본, (폐쇄)가족관계증명서 등	
입원	 진단세[단, 50만원 이하 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 입퇴원확인서(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및 실손의료보험의 경우는 제외) ※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추가 	- 실손의료보험 또는 통원(정액보험금) 청구시 진료비 계산서(영수증)로 갈음 ▶대상 : 실손통원 합산 청구금액 10만원 이하시	
통원	진단서통원확인서(통원일자별)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서·진료차트 등 진단명, 통원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※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바약제비계산서(영수증) 추가	※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 제외 ※반복청구시 추가서류 요청 가능	
장해	 - 후유장해진단서 ※발급전 고객만족센터 또는 고객만AZA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(일반)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 ・ 만성신부전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 ・ 사지절단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→ray필름 첨부 ・ 인공관절치환술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 ・ 비장, 신장적출: 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	- 팔, 다리관절, 척추장해는 반드시 AMA 방식의 운동각도 기재	
진단	- 진단서 - 진단사실 확인서류 [예시] 암 : 조직검사결과지 / 뇌졸중급성심근경색 : 정밀검사결과지(CT, MR, 심전도 등)		
골절	- 진단사·처방전·진료확인서·소견사·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		
수술	- 진단서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		
태아 보험	[신생아입원비] 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- 진단세[단,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] - 입퇴원확인서 [유산/사산] - 진단서(유산), 사산증명서(사산)	※자녀 등재 서류 수익자가 친권인인 경우: 가족관계증명서 수익자가 친권인이 아닌 경우: 친권인(2인) 위임장, 인감증명세(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), 개인(신용)정보 처리 동의서, 수익자와 친권인의 관계 확인서류	
재해 입증 서류	[재해 입증 서류] 1. 교통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손해보험사공제조합(버스, 화물, 택시 등) 사고사실확인서 2. 산업재해: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. 군인재해사고: 공무상병인증서 4.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: 법원판결문 5. 기타 재해사고: 공공기관(경찰서, 소방서 등) 사고사실확인서 6. 확인서류 발급불가 재해사고: 병원초진차트 등 재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재해사고내용 기재		

※사고내용-특성, 상품(보장내역)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※병원발급 서류는 병명, 병원직인, 환자인적사항 및 청구사유별 치료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원본기준입니다.

※조사가 필요할 경우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동의서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해외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청구서류는 한국어 변역 및 공증을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자세한 내용을 교**보생명 홈페이지(www.kyobo.co.kr)**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문의는 당사 고객만족센터 사고보험금 전용상담센터(1588-1810)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보험상담 및 불만 또는 건의사항 접수

전 고객만족센터 (지역번호 없이) 1588-1810 · 평일 09:00 ~ 18:00전국 고객PLAZA · 평일 09:00 ~ 15:50



